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855
----------	--------

제출년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박은정,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유재수, 송바우나,
황은화, 박은경, 최찬규,
한갑수, 이진분, 현옥순,
이지화 의원(13인)

1. 주 문

-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협약을 주도하는 한편,
- 국회가 미비한 제도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2010년 12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 제도가 도입되어, 자동차 등록이 소유자의 주소나 사용 본거지 관할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음.
-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중고차 매매단지 등이 밀집한 일부 지자체에는 타지역 차량 등록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행정 인력 부족 및 민원 처리 지연 등 행정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지방세법」은 차량 등록 장소와 관계없이 차량의 실제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등록 업무는 특정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도 세수는 다른 지자체로 귀속되어 '사무와 과세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
-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지자체 간 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법률 개정은 부적절하며,
- 신규등록 시 2,500원, 이전등록 시 1,500원의 수수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재정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그러나 현행 수수료는 실제 행정 처리 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을 겪는 지자체의 고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더불어, 2010년 체결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무비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정부와 국회에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참고사항

- 참고 자료 : 붙임
- 송 부 처 :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10년 12월,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취지 아래,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나 사용 본거지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해당 제도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매매단지 등이 밀집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차량 등록 업무가 집중되면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 장소와 관계없이 차량의 실제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자체는 업무만 폭증하고, 정작 세수는 타 지자체로 귀속되어 '사무와 과세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은 7만 2천여 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타지자체 등록 업무로 인해 행정 인력 부족, 민원 응대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를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지자체 간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률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사용 본거지의 신규등록 시 2,500원, 이전등록 시 1,500원의 수수료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현행 수수료는 실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을 겪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흘렀다. 2010년 제도 최초 도입시 체결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무비용에 대한 정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 왔다.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초 지자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설계자인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2010년 체결된 협약서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협약하도록 주도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25. 9.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